

# 위 임 장

본인은 2017년 3월 14일(화)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(경기도 안산시 소재)의 제 70기 정기 주주총회(그 속회, 연회 포함)에서 권유자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자(류기봉, 허귀행, 김경식) 중 1인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.

- 다 음 -

- 1. 주주번호 :
- 2. 소유주식수 : 주
- 3. 의결권 있는 주식수 : 주
- 4. 위임할 주식수 : 주
- 5.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

| 번호                      | 주주총회 목적사항   | 찬성                         | 반대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|
| 제 1 호                   | 제 70 기(2016.1.1 ~ 2016.12.31)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포함)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
| 제 2 호                   |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제 4 조 (공고 방법)            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제 5 조 (발행 예정주식의 총수)      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제 6 조 (1 주의 금액)          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제 7 조 (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)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제 8 조 (주식의 종류)           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제 8 조의 2 (이익배당우선주식)      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제 8 조의 3 (의결권배제주식)       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제 8 조의 4 (전환주식)          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제 8 조의 5 (상환주식)          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제 9 조 (주권의 종류)           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제 10 조 (신주인수권)           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제 10 조의 3 (주식매수선택권)      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제 10 조의 4 (신주의 배당기산일)    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제 10 조의 5 (우리사주매수선택권)    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제 14 조의 2 (전환사채의 발행)       |    |  |
| 제 15 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
| 제 15 조의 2 (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)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
| 제 16 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
| 제 20 조 (소집지)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

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      |               | 제 23 조 (주주의 의결권)        |  |  |
|       |               | 제 24 조 (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) |  |  |
|       |               | 제 27 조 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     |  |  |
|       |               | 제 28 조 (주주총회의 의사록)      |  |  |
|       |               | 제 29 조 (이사의 수)          |  |  |
|       |               | 제 30 조의 2 (집중투표제의 배제)   |  |  |
|       |               | 제 41 조 (상담역 및 고문)       |  |  |
|       |               | 제 41 조의 3 (감사의 임기)      |  |  |
|       |               | 제 41 조의 4 (감사의 보선)      |  |  |
|       |               | 제 41 조의 6 (감사의 감사록)     |  |  |
|       |               | 제 42 조 (사업년도)           |  |  |
|       |               | 제 44 조 (이익금의 처분)        |  |  |
|       |               | 제 45 조 (이익배당)           |  |  |
| 제 3 호 | 이사 선임의 건      | 사내이사 후보 오진수             |  |  |
| 제 4 호 |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제 5 호 |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제 6 호 |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
※ 의안의 찬반표시는 해당란에 O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

6.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·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

-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 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.
-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.

| 항목 | 지시내용 |
|----|------|
|    |      |
|    |      |

주 주 명 : (서명 또는 날인)

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:

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: 년 월 일 시